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51 / 전송 733-9535-6

문서번호 도개58541-3182

시행일자 1993. 12. 30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		시	장	
보존				영 10		
국	장	전결				
과	장	계				
계	장				법무담당관실차필	
기안	한선희			협조		

제목 서울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

1. 주공 개발(일) 1312-16364호('93. 12. 8)와 관련입니다.
2. 위. 대호로.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서울 신림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, 지구계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정산 및 개발기간 연장등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있어 관할구청과 협의하고 내용 검토하였거,
3.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등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'제2안'과 같이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하고자 합니다.

가. 신림지구 개요

- 면 적 :
 - ┌ 지정 : 27,206㎡
 - └ 변경 : 27,223㎡ (증17㎡)
- 주택건립호수 : 949호 → 960호 (증11호)
- 개발 기간 :
 - ┌ 지정 : '91. 6. 10 ~ '93. 12. 31
 - └ 변경 : '91. 6. 10 ~ '95. 6. 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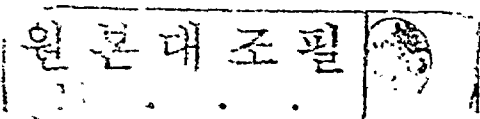
- 첨부 : 1. 고시문 1부.
2. 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도서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대한주택공사 사장

504

제목 : 서울 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



1. 개발(일) 1312-16364('93.12.8)와 관련입니다.

2. 귀사에서 위대호로 제출한 서울 신림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하고,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니 사업추진에 커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

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		변 경 일 자
		기 정	변 경	증 감	
서울 신림지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39번지 일원	27,206	27,223	증 17	'93.12. ※ 도면: 별첨

나. 개발계획 변경

1) 개발계획의 명칭 :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계획

2)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

가)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

나) 대표자성명 : 기정·사장 김한중, 변경 - 사장 박부찬

다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

3) 개발계획의 개요

가) 목 적 :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

나)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: 기정 : 949호, 3,796인
 변경 : 960호, 3,796인

4) 개발기간 : 기정 : '91.6.10 ~ '93.12.31
 변경 : '91.6.10 ~ '95.6.30

5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면 적 (㎡)			구 성 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증 감		
계	27,206	27,223	증 17	100	
주택건설용지	22,576	20,323	감 253	74.7	공동주택
공공시설용지	6,630	6,900	증 270	25.3	
- 도로	5,130	5,400	증 270	19.8	1개노선
- 어린이공원	1,500	1,500	505	5.5	1개소

6)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

가)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39번지 일원

나) 면 적 : [기 정 : 27,206㎡ (8,230평)
 [변 경 : 27,223㎡ (8,235평)

7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(변경분) : 별첨

8) 개발계획변경 평면도 : 별첨

9) 조 건 : 서울시 고시 171호('91.6.10) 및 서울시 고시 제172호('92.

5.30)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부한 조건을 본 승인조건으로 한다.

첨부 : 1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(변경)도서 1부.

2. 개발계획(변경)도서 1부.

3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(변경분)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택지개발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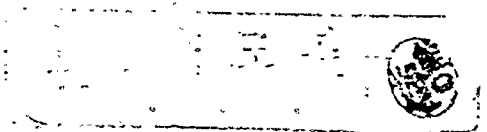
제목 : 서울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보고

1.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, 택지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1. 승인서 및 고시문 사본 각 1부.

2.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도서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

(제 4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참조 : 공보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서울신림,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
변경승인

다. 법적근거 :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및 제8조 제2항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서울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통보

1.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 촉
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하고, 서울특
별시 고시 제1993- 호('93.12.)로 고시하였거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고, 관
할구청장은 일반에 공람조치하기 바람.

첨부 : 1. 승인서 및 고시문 사본 각 1부.

2.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도서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권역구청장(도시정비과장), 시설계획과장



제1차	1993. 12. 30	431
장관	인재심사조정	부담발표
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 호

서울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

서울시고시 제1992-172('93. 5. 30)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, 같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,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대장과

1993 년 12 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가.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

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		변 경 일 자
		기 정	변 경	증 감	
서울 신림지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39번지 일원	27,206	27,223	증 17	1993. 12. 30

나. 택지개발계획 변경

- 1) 개발계획의 명칭 :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계획
- 2)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
 - 가)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
 - 나) 대표자성명 : 기정 - 사장 김한중, 변경 - 사장 박부찬
 - 다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

3) 개발계획의 개요

가) 목 적 :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

나)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: { 기 정 : 949호 3,796인
 변경 : 960호 3,796인

4) 개발기간 : { 기 정 : '91. 6. 10 ~ '93. 12. 31
 변경 : '91. 6. 10 ~ '95. 6. 30

5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면 적 (㎡)			구 성 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증 감		
계	27,206	27,223	증 17	100	
주택건설용지	20,576	20,323	감 253	74.7	공동주택
공공시설용지	6,630	6,900	증 270	25.3	
- 도로	5,130	5,400	증 270	19.8	1개노선
- 어린이공원	1,500	1,500	-	5.5	1개소

6)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

가)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39번지 일원

나) 면 적 : { 기 정 : 27,206㎡ (8,230평)
 변경 : 27,223㎡ (8,235평)

7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 (변경분) : 별첨

8) 개발계획 (변경) 평면도 : 별첨

9)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개발과 (731-6351~4) 및 대한주택공사 (545-7991)

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.

(관계도면은 게재생략)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 (변경분) 1부. 끝.